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위원	신 교 선 위원	소 속	평창군의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도시경제과장)	일 자	질의 : 2000년 12월 15일 답변 : 2000년 12월 15일
회 의	제82회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4차 예결특위		
【질의요지】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하수종말처리장의 자원별 지원을 제출			
【답변요지】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시·군에 있어서는 따로 붙인 표와 같이 양여금 53%, 지방비 30%, 기타 17%의 재원으로 구성됩니다. 이중 기타 17%는 광역시나 도청소재지의 지방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교부세를 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 교부세로서 사실상 군비와 같습니다.			
<p>그 뒤 팔당호동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으로 환경부에서는 한강 수 중보 하류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물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중 지방비 부담액 전액과 운영비의 70%를 지원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.</p> <p>이러다 보니 당초 자원분담비율에서 지방비가 아닌 기타로 분류된 것은 기금지원에서 제외되었고 사실상 군비 부담으로 되게 되었습니다.</p> <p>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군 보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인 타 시군과 강원도에서는 기타로 분류된 17%를 양여금이나 물관리 기금으로 지원 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시·군비의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.</p> <p>따라서 명분상으로는 지방비 부담분(따로 붙인 표에서 나타난 30%) 전체를 물관리 기금에서 지원해 주므로 지방비 부담분이 없다고 하나 교부세로 분류된 17%는 사실상 군비 부담분으로서 이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</p> <p>참고로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거나 추진 중인 시군에서는 모두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/p>			

수질오염방지사업계획서 작성지침

< 지방양여금 사업 >

1997. 5.

강 원 도

목 차

1. 총괄
2. 사업계획서 제출절차 개선
3. 사업별 지원체계 및 지원율
4. 사업별 작성지침
 -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
 - 하수관거정비사업
 - 분뇨처리시설사업
 -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사업
 - 오염하천정화사업
 -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

1. 총괄

〈 목 표 〉

수질오염방지분야 지방양여금 재원은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으로 상수원 수질개선과 아울러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

가. 수질오염방지분야 재원

- 지방양여금법령의 개정(1996.12)으로 수질오염방지분야 재원을 연차별 증액 조정

개 선 전	개 선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정사업재원 17% · 농특세 전입금중 4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<u>특정사업재원 17% → 24.5%</u> (4년간에 걸친 연차별 증액으로 '97. 19%, '98. 21%, '99. 23%, 2000이후 24.5%) · 주세 10% 추가 · 농특세 전입금중 40%

* 특정사업재원 : 주세 60%, 전화세 100%, 토지초과이득세 50%

나. 대상사업과 사업간 배분비율

대 상 사 업	사업간 배분비율
○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	농특세전입금을 제외한 재원의 55%
○ 하수관거정비사업	농특세전입금을 제외한 재원의 33%
○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	농특세전입금을 제외한 재원의 8%
○ 오염하천정화사업	농특세전입금을 제외한 재원의 4%
○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	농특세전입금

3. 사업별 지원체계 및 지원율

구 분		도시화수준	재원분담비율(%)			비 고
			양여금	지방비	기 타	
<u>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</u>		광역시	10	90		일반시군은 교부세 17% 지원
		도청소재지	50	50		
		일반시·군	53	30	17	
<u>하수도관 정비사업</u>	신 설	광역시	30	70		
		도청소재지	50	50		
		일반시·군	70	30		
	개 보수	광역시	10	90		
		도청소재지	20	80		
		일반시·군	30	70		
분뇨처리시설 사업		광역시	30	70		
		지원시·군	70	30		
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사업		전 체	70	30		
오염하천정화사업		광역시	30	70		
		도청소재지	50	50		
		일반시·군	55	45		
농어촌하수도사업중 면단위 하수도 사업		전 체	70	30		